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시행 2014.2.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2.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업무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안 제3조의4 신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살처분 명령 및 도태 권고 대상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안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1) 가축전염병 발생 시 다른 농장 및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가축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에 대한 도태 권고 조치가 필요함.

2) 이에 따라 발병 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크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인 소해면상뇌증을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명시하고, 추백리·가금티프스는 도태 권고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추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 연장방법 마련(안 제27조제2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축 사체 등의 매몰지에 대하여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라. 수수료의 납부 방법 개선 및 면제 대상 확대(안 제45조의3제1항제1호 및 안 제45조의4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국민이 병성감정 수수료, 검역 수수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 축산법령

수출축산물 검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 ·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매물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물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

에 따른 매물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 방역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처분·소각·매물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신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를 “방역 정보시스템을 통한”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조제2항”으로, “축산관련단체에게”를 “축산관련 단체에”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법 제17조제5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원유”를 “원유·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의8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결핵병”을 “결핵병·소해면상뇌증”으로, “돼지인플루엔자”를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오제스키병·추백리·가금티프스”로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돼지열병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굽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굽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관리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

:: 축산법령

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 대하여”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항체가(抗體價)를”을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각각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 경인항,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동해·목호항, 포항항, 마산항, 여수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돼지”를 “소·돼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제45조의3제1항제1호 중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한다.

제45조의4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 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별표 2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다목”을 “바목”으로 한다.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力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 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번식용 돼지

라.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중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소

마. 추백리 또는 가금티프스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종계와 함께 사육된 종계

바. 그 밖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매몰 장소의 선택
 - 1)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 매몰 수량
 - 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 다) 매몰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크기
 - 3)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축산법령

-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 나) 매몰지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몰지는 지하수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 다) 음용 지하수 관정(管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및 샘물보전구역
 -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2. 수출·입 종란 검역시행장

별표 14의2 제6호 표의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1) 중 “디지털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표의 3. 검역계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출·입 종란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3. 검역계류 시설	1) 수입 종란 검역시행장의 경우에는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소독·검란할 수 있는 시설과 부화기를 갖춘 부화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계류시설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수세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역계류시설은 방서·방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검역계류시설은 판넬,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된 고정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14의2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각각 “제15호”로 한다.

15. 수출돼지 부산물 중 비식용(非食用) 돈피(豚皮) 스크랩의 보관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3. 검역준비실	가검물 취급 등 검역관의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의 물품을 갖춰놓아야 한다. 1) 기자재: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수동분무기 2) 소독약품: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갖춰놓을 것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및 방한복
나.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하기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나. 보관시설	2) 보관시설은 그 안에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갖춰 두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다.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 이하이어야 하고, 냉장 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 이상 10℃ 이하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 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6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 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원유”를 “원유·알”로 하고, 같은 란 각 호 외의 부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구분	차량유형
①	가축운반
②	원유운반
③	알운반
④	동물(의)약품운반
⑤	사료운반
⑥	가축분뇨운반
⑦	왕겨운반
⑧	퇴비운반
⑨	진료
⑩	인공수정
⑪	건설팅
⑫	시료채취, 방역
⑬	기계수리

별지 제12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

:: 축산법령

조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제1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